

집합투자기구 변경 대비표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HDC고배당밸류1호증권투자회사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예정일 : 2021.01.13.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투자위험등급 변경)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 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18조(신주의 발행 등) ① <생략>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지체 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<u>금전으로</u> 납입하여야 한다. ③ ~ ⑧ <생략></p>	<p>제18조(신주의 발행 등) ① <생략>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지체 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<u>현금 또는 수표로</u> 납입하여야 한다. ③ ~ ⑧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8조의2 (판매수수료) ① ~ ③ <생략> ④ 판매회사는 Class S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 다만,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입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<u>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에서</u>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⑤ ~ ⑥ <생략></p>	<p>제18조의2 (판매수수료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판매회사는 Class S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환매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. 다만,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입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<u>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</u>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⑤ ~ ⑥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28조(주식의 소각) 제21조 내지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시로 본다.</p>	<p>제28조(주식의 소각) <삭제></p>
<p>제30조(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) ① <생략> ② 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통지하여야 한다. ③ <u>한국예탁결제원은</u>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은</u>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"주주명부"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⑤ ~ ⑥ <생략></p>	<p>제30조(주주명부) ① <현행과 같음> ② 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통지하여야 한다. ③ <u>전자등록기관은</u>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~ 2. <현행과 같음>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은</u>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⑤ ~ ⑥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56조(차입 및 보증의 제한) ① <생략>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<u>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</u> 차입 당시의 회사 <u>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</u>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③ <생략></p>	<p>제56조(차입 및 보증의 제한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<u>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및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</u> 차입 당시의 회사 <u>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</u>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③ <현행과 같음></p>

<p>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생 략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 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7조(정관의 변경) ① ~ ⑦ <생 략>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7조(정관의 변경) ① ~ ⑦ <현행과 같음> ⑧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는 제61조와 는 별도로 제9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 에는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정관·투자설명서에 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 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 다. 1. 금액 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6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 및 제2호의 기간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 설정과 관련하여 지 급한 제비용(관련세금 및 분담금, 법률자문료 등) 2. 기간 : 변경시행일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⑩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9항 적용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를 상대(제31조제2항에 따 른 신탁업자가 주주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주주 및 신탁업 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<p>제68조(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..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서 면, 전화·전신·<u>모사전송</u>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.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<생 략>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 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<u>전자우편</u>의 방법으 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. ④ <생 략></p>	<p>제68조(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..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서 면, 전화·전신·<u>팩스</u>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 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.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<현행과 같음>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 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<u>전자통신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...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관련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 는 그 방법에 의한다. ④ <현행과 같음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부 칙</u> 이 정관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p>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투자위험등급 변경)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
	투자위험등급 변경 및 정기갱신	투자위험등급 : 5등급 -	투자위험등급 : 4등급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 등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- 투자대상	-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	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'실제 수익률 변동성'을 감안하여 투자회사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3.85% 이며, 5등급(낮은 위험) 으로 분류됩니다.	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'실제 수익률 변동성'을 감안하여 투자회사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5.55% 이며, 4등급(보통 위험) 으로 분류됩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	(5) 일부환매 주주(투자자)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주주가 주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권을 환매하고, 잔여주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.	(5) 일부 환매 주주(투자자)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이하 삭제>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	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	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. ① 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

		<p>② 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<u>가격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⑥ 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</u>로 평가</p>	<p>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② 장내파생상품 :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<u>가격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.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</p> <p>⑥ 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<u>최종시가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로 평가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재무정보	정기갱신	-	- 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		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	-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자산운용보고서 (3)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	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...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생략></p> <p>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, ..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생략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...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</p> <p>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, ..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이하 현행과 같음></p>

[간이투자설명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투자위험등급 변경)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위험등급 변경[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 → 4등급)] 및 정기갱신			

<끝>.